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 설치〉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56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0. 23.
3. 회 부 일: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

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신청인에 대한 심의 결과 통지의무 등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illegible]

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결서등의-----.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심의) ①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판결서등

	<u>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¹⁾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09조²⁾가 규정한 재판공개원칙을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한 것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³⁾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는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판결서등 열람·복사의 제한이 손쉽게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재판공개원칙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경우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공개원칙의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됨.

다만,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판결서등 열람·복사의 제한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 결정⁴⁾함. 개정안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경우 10명 이내의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실무상 법원사무관 등이 열람·복사의 제한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한 후, 제한

3) 김희욱·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343.~344.

4)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제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결정된 판결서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라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제한 여부를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경우, 기존 공판 사건처리업무⁵⁾에 개정안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매년 이루어지는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 건수⁶⁾ 및 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업무부담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 현황 : 2023년은 337,818건, 2022년은 310,502건, 2021년은 319,750건 등으로 매년 3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2024. 9.

6)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한 건수 등의 통계는 현재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임.